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40 발의연월일: 2022. 9. 1.

발 의 자:김경협·장철민·김홍걸

기동민・조승래・최강욱

고용진 · 김두관 · 정태호

김주영 · 김남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, 조합 예탁금(출자금)에 대한 이자(배당)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, 비과세예탁금(출자금)은 농어민· 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,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.

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, 조합 예탁금(출자금)에 대한 이자(배당)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 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, 제 105조제1항).

주요내용

- 가. 비과세 예탁금(출자금)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 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).
- 나.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 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105조제1 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, "202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 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 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) -----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・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7년 12월 31일까지 ----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1.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.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

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지 저율과세 등)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 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 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

<u>12월 31일</u>
2. <u>2029년 1월 1일</u>
<u>2027년</u> 12월 31일
<u>2</u> 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
<u>월 31일</u>

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② 2029년 1월 1일-----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<u> 유</u>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 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-----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12월 31일 -----해서만 적용한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